

#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64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3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 개최일의 정례화를 필요시 개최하려는 등의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가. 고성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 확대(안 제2조제3항)

나. 회의 개최일을 필요시로 조정(안 제4조제1항, 제2항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
-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에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원회를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
- 군정조정위원회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민간인은 몇 명 위촉하였는지
- 답 : 내부조직으로서 민간인은 없으며, 실과 사업소장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축산과장, 기술보급과장,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이 제외되어 있음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0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